##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연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048

발의연월일: 2024. 8. 21.

발 의 자:정연욱·주호영·서일준

김선교 • 이헌승 • 김소희

최은석 · 정동만 · 박수민

엄태영 · 김민전 · 박상웅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부의 변칙적인 이전을 방지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"2050 탄소 중립" 달성 등 탄소배출과 관련된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음.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 투자, 환경 부담금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됨.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 은 채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 일괄적으로 '일감 몰아주기 증여세'를 부과하여 순환자원 유통업체에 불필요한 과세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 이 있음.

이에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에 따른 순환자원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제외하여 "2050 탄소 중립" 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45조의3제4항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의3제4항 중 "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 외한다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
- 2.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제23조에 따른 순환자원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
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) 제45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매출액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5조의3(특수관계법인과의 거	제45조의3(특수관계법인과의 거		
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)	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)		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		
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	4		
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	
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	당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.		
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			
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			
<u>외한다</u> .			
<u>&lt;신 설&gt;</u>	1.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		
	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		
	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		
<u>&lt;신 설&gt;</u>	2.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		
	법」 제23조에 따른 순환자원		
	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		
<u>&lt;신 설&gt;</u>	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		
	<u>는 매출액</u>		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		